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82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0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활동임
- 따라서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0
----------	-----

발의연월일: 2015. 12. .

발 의 자: 박승희 · 유일용 · 유제홍 ·
김경선 · 최석정 · 정창일 ·
이영훈 · 김진규 · 공병건 ·
오홍철 · 신영은 · 이용범 ·
안영수 · 황홍구 · 최만용
의원 (찬성자 4명)

□ 제안이유

-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활동임
- 따라서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의2)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 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25조제1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시관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투자환경 조성) ①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3. 공장설립, 인가·허가 등 행정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 ----- -----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 ----- 인천광역시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 --- 각 호의 ----- -----.

1. ~ 3. (생략)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관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 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회의에 부치는 --

제1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외국인투자지역---

-----.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 관계 법령-----

--- 행정적·재정적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투자환경 조성) ①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

	<u>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u> <u>2.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u> <u>3. 공장설립, 인가·허가 등 행정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u> <u>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u> <u>5. 그 밖에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제22조(민간조직의 활용)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민간조직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 ----- ----- -----.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비용 발생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경우 비용 발생 요인이 있으나, 제공 서비스 등의 구체화 이전 단계 이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담당관 김태성